

민간위탁 개념 혼동 사례 위·수탁 협약서 일부 발췌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

“을”은 경비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제에 따른 “갑”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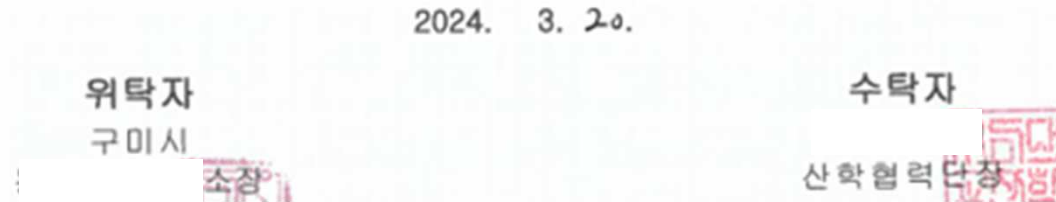
사업명: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구미시 수임사무 재위탁 예시 및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소정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장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역시 **동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규정 내용상 분명하며**, 달리 동장이 그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중 략) 결국 법령상의 근거 없이 동장이 그 수임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반된 규정이다.

2024. 3. 20.



※ 출처: [https://www.law.go.kr/판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2000추36\)](https://www.law.go.kr/판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2000추36))